

2020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	044-201-1791
		사무관 임채홍	044-201-1792
		주무관 이병길	044-201-1797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포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기계종합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65.0	54.3	63.3	64.8	'21.1.	(당해년도 안전보험 가입인원 / 농업분야경제활동인구)×100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천건)	105	79	93	102		전체 기종 보험가입 건수
6개 기종* 가입률(%)	-	6.8	8.1	9.0		

*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6,190	116,650	140,004	164,670
보 조	58,095	58,325	70,002	82,335
자부담	58,095	58,325	70,002	82,335

5. 사업 운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2.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농기계종합보험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3.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I 또는 II(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 (국고지원 예시)

구분	필수가입			선택가입	국고지원 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I 또는 II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	○	○	X	지원
	○	○	○	○	지원
	X	○	○	○	미지원
	○	X	○	○	미지원
	○	○	X	○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4. 국고지원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 지원

5. 보장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별첨2]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별첨3]
- 농기계종합보험 : [별첨4]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기준
 - 순보험요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을 사용
 - 보험요율 산출주기는 1년으로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료 할인·할증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 농기계종합보험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

7.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8. 보험상품 연구 개선

- 농금원과 보험사업자는 농작업재해와 농기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9. 통계생산 및 관리

- 농금원은 보험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 등에 활용
-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보험 통계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10.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이하 “지역 대리점”)에 위탁할 수 있음

11. 보험계약 인수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제한할 수 있음

12. 보험금의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13.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사업주관기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시달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통계관리 등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14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8조)
 -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정책보험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 후 약정 체결

사업시행기관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금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금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계획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서류를 농금원에 제출

2. 사업준비 및 시행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추진
-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품개선회의”를 구성·운영
 - 조직구성: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사업자 등
 - 개최시기: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각 반기별 2회(단, 필요시 수시 개최)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식품부의 세부사업 기본계획 및 농금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농업인 등에 대한 정책보험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합의
 -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그 내용을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보험 가입

가입자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사업시행기관

- 청약서 등 가입 관련 서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국고지원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 방지 노력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할 경우 농금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4.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사업시행기관

- 지급시기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5. 보조금 배정

사업주관기관

-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시행기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험 가입현황서를 농금원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금원에 제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익년도 4월 30일까지 농금원에 제출

6. 이행점검

사업관리기관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태,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및 일정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보조금 사용 내역 등
 - 사업실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사업시행기관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7. 제재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보험사업자 등에 요구
(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농금원에 지체없이 제출)

사업시행기관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금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8.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금원에 제출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금원, 익년 3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농금원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부진항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보험사업자는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별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 -
주소			
담당자	직위		휴대전화
	성명		이메일

2.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예산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상 신청액)
총예산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첨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7	'18	'19	'20(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

[별첨2]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유족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5,000만원 × 장해율	9,000만원 × 장해율	-	1.2억원 × 장해율
간병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3만원	2만원	6만원
재활급여금 (고도장해)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만원			3,000만원
재활급여금 (재해장해)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 × 장해율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30만원 (진단1회당)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30만원 (수술1회당)			
상해·질병치료급여금	기본 보장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추가 보장	입원 1,000만원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험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2. 특별약관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제비지원특약	보험기간 중 사망 시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 시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 시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한 때	10만원

주)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별첨3] 2020년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장내용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족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1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1,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1,000만원×장해율
간병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2만원
재활 (고도장해) 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 (재해장해) 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5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 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30만원(진단 1회당)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1,000만원 한도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한도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한도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별첨4] 2020년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내용

1. 보상하는 담보

담보	내용
농기계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 II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와 중복가입 불가)
대인배상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물배상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보상

2. 보장내용

가. 농기계손해

지급 사유	지급 기준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과 통상 장치되어 있는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농기계 중 ‘농업용무인헬기’는 비행기간과 비행기간 이외의 사고로 구분하여 보상 ⑤ 피보험농기계 중 출고 된지 2년 이하의 트랙터 또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기계적 사고 ^{주1)}	전손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주2)} 분손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 ⑤의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

주1) 기계적 사고 : P.T.O, 사이드기어 등 농용트랙터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동력을 부속작업기에 전달하여 농용트랙터에 연결된 부속작업기가 정해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가 과부하 또는 마모성 소모품에 발생한 누적적 충격에 의해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주2) 보험가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농기계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최근의 농기계기준가액, 그러나 농기계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

나. 자기신체사고

지급 사유	지급 기준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망 ^{주1)} :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부상 ^{주2)} : 20만원 ~ 1,500만원 (상해등급 14급 ~ 1급) ·후유장애 ^{주3)} : 200만원 ~ 5,000만원 또는 400만원 ~ 10,000만원 (장애등급 14급 ~ 1급)

주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주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

주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다. 대인배상

구분	항목	지급기준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80백만원							
		사망자 연령이 19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 50백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부상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기타손해배상금	약관참조							
	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 ※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지급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구분	항목	지급기준
후유 장애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65세 미만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 65세 이상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비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65세 미만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 65세 이상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 ~ 최저 5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가정간호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라. 대물배상

지급 사유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한도: 2천만원 ~ 5억원(선택) (2천만, 5천만, 1억, 2억, 3억, 5억) ·보상항목: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약관참조)

마.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지급 사유	지급 기준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망·후유장애 : 10,000만원 한도 ·부상 : 1,000만원 한도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

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지급 사유	지급 기준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사고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보상한도: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5%

사.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구분	지급 기준
벌금	·보상한도: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한도: 1사고당 500만원
형사 합의금	·보상한도: (사망)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1~3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4~7급) 1인당 1,500만원 한도